# 필수농자재 국가지원법안 (어기구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576

발의연월일: 2024. 7. 10.

발 의 자: 어기구·강선우·김재원

이개호 · 황 희 · 박지원

박 정ㆍ허종식ㆍ소병훈

박수현 · 문금주 · 정준호

의원(12인)

#### 제안이유

현재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비료·농약 등의 농업생산비 폭등으로 농업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들에게 필수농자재 구입비를 지원하는 관련 조례를 제정, 시행 중에 있음.

하지만 지방자치단체의 열악한 재정 여건을 감안했을 때 필수농자 재 구입비 지원에 어려움이 예상되고 필수농자재 구입비를 지원하는 지방자치단체와 그렇지 못한 지방자치단체 간 농업인의 소득 격차가 발생할 수 있음. 또한, 필수농자재 구입비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국가가 직접 지원하는 쪽으로 정책의 방향을 잡고이를 법제화 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비료·유류·퇴비 등의 필수농자재 구입비에 대한 지원을 국가가 직접 하도록 하는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농업인의 안정적인 생활을 보장하고 농산물의 안정적 생산에 기여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가. 이 법은 필수농자재 구입비 지원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농업인의 안정적인 생활 보장과 농산물의 안정적 생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 나.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에게 해당 연도 직전 3개년의 필수농자재 품목별 평균가격과 당해 연도 평균가격을 비교하여 인상된 차액의 100분의 50을 지원하도록 함(안 제5조제1항).
- 다. 시·도지사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필수 농자재 지원에 대한 지원 기준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제2항).
- 라. 필수농자재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지원 신청을 하여야 하고,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자는 30일 이내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 및 제7조).
- 마. 필수농자재 지원과 관련하여 필수농자재 지원 품목 등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소속으로 필수농자재심의위원 회를 두도록 함(안 제8조).
- 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필수농자재 구입비 지원에 필요한 기초자료 를 확보하기 위하여 필수농자재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
- 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필수농자재 지원을 받은 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 그 지원금을 환수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

- 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이 법률에서 정한 내용과 유사한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하거나 제외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
- 자. 이 법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권한 및 업무는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관련 기관·단체에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

## 필수농자재 국가지원법안

제1조(목적) 이 법은 필수농자재 구입비 지원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농업인의 안정적인 생활 보장과 농산물의 안정적 생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농업인"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을 말한다.
- 2. "필수농자재"란 농산물의 안정적 생산에 꼭 필요한 영농자재로서 비료, 퇴비, 유류, 비닐, 농약, 사료 및 제8조에 따른 필수농자재심 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품목을 말한다.
-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업 인이 필수농자재를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 립·시행하여야 한다.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필수농자재 가격이 급격하게 상승한 경우 농가경영안정 대책을 수립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농업인의 필수농자재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지원 대상 및 기준)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어업경영체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1호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에게 해당 연도 직전 3개년의 필수농자재 품목별 평균가격과 당해 연도 평균가격을 비교하여 인상된 차액의 100분의 50을 지원한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필수농자재 구입비 지원(이하 "필수농자재 지원"이라 한다)에 대한 지원기준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달리 정할 수 있다.
  - ③ 그 밖에 필수농자재 지원 기준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6조(지급신청) ① 필수농자재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필수농자재 지원 신청을 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필수농자재 지원의 지급 신청 및 방법 등 필요한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7조(이의신청) ① 필수농자재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자는 제외 결정을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타당한 사유

로 그 기간 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없었음을 소명하였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기간 내에 결정을 할 수 없을 때에는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8조(필수농자재심의위원회) ① 필수농자재 지원과 관련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소속으로 필수농자재심의위원회를 둔다.
  - 1. 필수농자재 지원 품목
  - 2. 그 밖에 필수농자재 지원에 필요한 사항
  - ② 제1항에 따른 필수농자재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9조(실태조사)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필수농자재 지원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확보하기 위하여 필수농자재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실태조사를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관련 기관 및 단체의 장에게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출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 ③ 그 밖에 실태조사의 시기 및 범위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0조(환수)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필수농자재 지원을 받은 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 그 지원금 을 환수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금의 환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1조(중복지원 제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이 법률에서 정한 내용과 유사한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하거나 제외할 수 있다.
- 제12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이 법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 ② 이 법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업무는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